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 정비. (안 제32조)
-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 신설. (안 제33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## 사전예고(결과) : 붙임5

- 입법예고 : 2022. 06. 27. ~ 2022. 07. 07. (1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6

- 방침결정문 : 붙임7

## 〈 불임 1 〉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본문 중 “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”를 “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32조제5항 중 “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4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배)이상으로 거리를 띠어야 하고 낮은”을 “낮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건축디자인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축디자인과장 강 신 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건축정책팀장 이 선 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문 수 (행정 2914)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건축지도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에 의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3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4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배)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⑥ · ⑦ (생 략)</p> <p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24조(건축지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</p> <p>제3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낮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9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8월 25일  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“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”으로 하고, 최소 이격거리에 관한 단서를 추가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정함.

## 주요골자

- 채광을 위해 띄워야 하는 거리 중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 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.”를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한다.”로 수정.(현행 제32조 제4항)
- 채광을 위해 띄워야 하는 거리 중 “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.”를 “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한다.”로 수정(안 제32조 제5항)

## **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현행 제32조제4항 “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안 제32조제5항 “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.”를 “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